

의료정보/의무기	기록의 개인정보	최근과리 및	· 채인
<u> </u>	177 / 11 / 10 -	TIH: '- X	

관리번호	W-12.1 (1)	제정일	2013년 02월 15일
승인책임자	병원장	최근개정일	2016년 10월 31일
검토책임자	규정관리위원장	시행일	2016년 12월 01일
주무부서		검토주기	3년
관련근거	의료기관인증기준12.1	검토예정일	2019년 10월 30일

# 1. 목적

- 1. 진료와 관련된 정보의 원활한 전달과 업데이트를 위해 의무기록이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한다.
- 2. 진료에 필요한 업무 목적별 접근권한을 규정하고 접근 절차를 제시한다.
- 3.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기록의 위조를 방지한다.

# Ⅱ. 정의

병원에 구축된 정보자산을 이용함에 있어 직종별, 용도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읽기, 쓰기, 삭제, 출력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.

# Ⅲ. 적용범위

- 1. 의사직
- 2. 간호직 간호사, 간호조무사
- 3. 진료지원직 물리치료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영양사, 약사
- 4. 행정직 원무과, 심사과, 전산팀
- 5. 예실
- 6. 의무기록사

### Ⅳ. 정책

- 1. 전자의무기록, 영상의무기록과 전자화된 환자정보는 사용자 그룹별(직종별, 부서별, 목적별)로 분류하여 접근권한의 범위를 읽기, 쓰기, 출력으로 구분하여 권한을 부여한다.
- 2. 사용자계정을 관리하며 접근권한을 재검토하고 업무 구분(근무, 퇴직, 휴직, 연수, 인사이동)에 따라 접근권한을 관리한다.
- 3. 직원 채용 시 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서약서를 작성한다.
- 4. 위탁업체 및 간호실습생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.
- 5. 전자공인인증(전자서명)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전자인증을 발급 받는다.

# V. 절차

- 1. 의무기록 접근이 허용되는 환자 명시
  - 1) 통상적인 진료환자의 기준과 접근 허용범위를 명시한다.
  - 2) 진료 외 환자의 경우 의무기록 접근 허용여부, 절차 및 허용범위를 명시한다.
  - 3) 개인건강정보 접근권한 환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  - (1) 진료환자



- ① 입원환자 : 퇴원일 이후 ~ 30일
- ② 외래환자 : 진료일 이후 ~ 7일
- ③ 진료환자는 현시점의 진료기록과 이전 입원 및 외래진료기록을 모두 포함한다.
- (2) 진료 외 환자
  - ① 입원환자 : 퇴원 30일 이후 환자
  - ② 외래환자 : 진료일 7일 이후 환자
- 2. 별도로 의무기록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
  - 1) 사생활 보호 대상 관리
    - (1) 사생활 보호 요청 환자의 경우 사생활보호요청서[별첨 3]를 작성하여 원무과에 제출한다.
    - (2) 대상 환자의 주치의만 의무기록 읽기의 권한을 갖는다.
- 3. 직원이 아닌 외부자중 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
  - 1) 외부자는 정보이용 목적이 확인되는 서류(공문, 협조전, 신청서, 서약서)를 제출 후 접근이 가능하다.
  - 2) 기록의 열람 및 조회는 의무기록위원회의 관리 하에 할 수 있다.
- 4. 직종별/목적별 의무기록 접근권한[별첨 1]
  - 1) 직종별 의무기록의 권한
    - (1) 담당의사(주치의)
      - ① 담당의사(주치의)는 해당 환자의 주치의인 전문의과 소속 진료과의 전임의 모두 포함한다.
      - ② 진료 환자는 order의 조회, 입력, 수정, 삭제를 할 수 있으며 의무기록의 작성, 열람 및 수정, 삭제가 가능하다.
      - ③ 진료 외 환자의 의무기록은 사유를 입력한 후 접근이 가능하다.
    - (2) 협진의사
      - ① 의뢰받은 환자에 대해서 담당의사(주치의)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      - ② 담당의사와 같이 작성, 수정 및 열람권한을 가지며 의무기록, 검사결과의 입력 및 조회를 할 수 있다.
    - (3) 담당과가 아닌 의사
      - 진료, 진료 외 환자의 의무기록은 모두 사유를 입력한 후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다.
    - (4) 간호사
      - ① 담당 간호사는 해당 외래 진료과의 간호사와 해당 병동의 간호사를 말한다.
      - ② 담당 간호사는 진료환자의 전산기록 및 의무기록을 조회, 입력, 수정, 삭제할 수 있다.
      - ③ 진료 외 환자의 의무기록은 사유 입력 후 접근이 가능하다.
    - (5) 간호조무사의 권한
      - 진료 보조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읽기의 권한을 갖는다.
    - (6) 약사, 영양사의 권한
      - ① 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약사는 해당 환자의 대한 읽기의 권한을 갖는다.
      - ② 의사의 지시가 발생한 환자의 의무기록에 한하여 읽기의 권한이 있고 해당 지시에 대한 회신 내용 및 진료지원기록은 읽기, 쓰기의 권한을 갖는다.
    - (7) 의무기록사의 권한
      - ① 의무기록의 질 관리와 완결관리를 위하여 모든 환자의 의무기록에 대한 읽기, 출력 권한을 갖는다.



- ②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를 위하여 해당 환자의 의무기록에 대한 읽기, 출력 권한을 갖는다.
- (8) 물리치료사의 권한

재활치료 내용의 쓰기, 수정의 권한이 있고 검사나 처치오더가 있는 환자의 의무기록에 한하여 읽기의 권한을 갖는다.

(9) 임상병리사

검사나 처치오더가 있는 환자의 의무기록에 대한 읽기의 권한을 갖는다.

(10) 원무과 및 심사과 직원의 권한

제증명 업무, 사본발급 업무 및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하여 해당 환자의 의무기록에 대한 읽기, 출력 권한을 갖는다.

(11) 전산팀 직원의 권한

전산개발 및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해 읽기 권한을 갖는다.

(12) QI실 직원의 권한

업무에 필요한 읽기 권한을 갖는다.

- (13) 그 밖의 직원의 경우 의무기록위원회의 승인 후 제한적 범위에서 읽기의 권한을 갖는다.
- (14) 의무기록의 출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력신청서[별첨 2]를 작성하여 의무기록 담당자에게 제출한다.
- 2) 의무기록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따른 접근 사유를 입력하고 조회 할 수 있다. 접근 사유는 진료용, 예약확인변경, 교육, 원무보험, 진료비 심사용, 진료지원 업무 등이 있다.
- 5. 직원들이 직종에 따른 의무기록 접근권한을 인지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  - 1) 정기직원 교육 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.
  - 2) 부서별로 해당 부서의 의무기록 접근 권한을 인지하도록 부서장이 지도한다.
- 6. 사용자계정 관리
  - 1) 총무과(인사담당자)은 신규채용, 인사이동, 휴직, 연수, 퇴직 시는 해당 명단을 전산실에 통보하다.
  - 2) 총무과에서는 신규 입사 시 취합된 서류 중 EMR(OCS) ID신청서, 공인인증 신청서, 신분증 사본은 전산팀에 제출하고 퇴사 시에는 EMR해지 신청서를 취합하여 전산팀에 제출한다.
  - 3) 사용자 계정은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고, 전산실에서는 사용자 ID를 부여하며 정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의무기록담당자가 그룹별 접근권한에 따라 직원의 직종, 부서에 따른 의무기록 접근권한을 관리한다.
  - 4) 인사이동 및 휴직, 연수, 퇴직 시(퇴직 날로부터)는 접근권한을 즉시 변경, 정지, 말소한다.
- 7. 접근권한 관리
  - 1) 접근권한 재검토는 연 1회(매년 12월 말일) 총무과에 재직명단을 요청하여 확인 후 실시한다.
- 8. 직원 채용 및 외주계약 시 보안을 위한 절차
  - 1) 신원 검증 관련내용
    - (1) 직원 채용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자격여부를 확인한다.
  - 2) 병원직원은 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서약서[별첨 4], 위탁업체 및 실습생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[별첨 5, 6]을 작성해야 한다.
    - (1)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및 유출에 대한 책임



- (2)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정책을 위반했을 시 법률적인 책임 처벌 규정
- (3) 자필서명
- (4) 관리대상 : 전 직원 및 위탁 , 실습생
- (5) 관리부서 : 총무과
- 9.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규정 위반 시 처벌사항
  - 1)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불법 사용자 자신에게 있다.
  - 2)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정책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고 위반사례를 조사하여 병원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병원 인사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.
  - 3) 불법 사용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.
    - (1) 본인에게 부여된 접근 권한을 위배한 자
    - (2)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환자의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를 조회, 변조, 훼손시킨 자
    - (3) 업무권한 범위내서라도 업무이외의 용도로 환자의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탐지한 자

### 10. 전자서명과 공인인증

- 1)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의무기록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의무기록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이다.
- 2) 인증은 전자 서명된 의무기록이 서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3) 인증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전자인증을 발급받아 이를 본인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다.
- 4) 전자서명 인증대상은 의사, 간호사 및 쓰기의 권한이 있는 자로 한다.
- 5) 작성된 의무기록에 대하여 작성자가 직접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.
- 6) 전자서명의 발급 및 관리의 제반업무는 전산팀에서 담당하며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 자는 전산팀에 공인인증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7) 전자서명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마다 갱신하여 사용한다.
- 8) 전자서명의 폐기는 사용자의 퇴사가 확인되는 즉시 폐기한다.



# VI. 참고

- 1. 의료법 제19조(비밀누설 금지), 제21조(기록 열람 등), 제23조(전자의무기록)
- 2.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(정통부 고시 제2001-25호)
- 3. 의료기사 등 관련법률 제10조, 제22조1항3호 등
- 4. 전자서명법 제2조, 제3조, 제18조2항

# [별첨]

별첨1. 사용자 그룹별 의무기록 접근권한

별첨2. 의료정보/의무기록 출력신청서

별첨3. 사생활보호 요청서

별첨4. 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서약서

별첨5.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서약서(실습생)

별첨6.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서약서(용역)

입안자	규정관리위원장	
승인책임자	병원장	
서명일		



[별첨 1] 사용자 그룹별 의무기록 접근권한

	구분	접근권한				
직종	별 / 부서별	읽기	쓰기	수정	출력	업무
의	사	0	0	0	×	담당환자의 진료기록
간	호 사	0	0	0	×	담당환자의 진료기록
간 :	호 조 무 사	0	×	×	×	간호보조업무
	물리치료사	0	0	0	×	물리치료
	영 양 사	0	0	0	×	영양상담
진료지원	약 사	0	×	×	×	복약상담
	임상병리사	0	×	×	×	검사시행
	방 사 선 사	0	×	×	×	검사시행
	원 무 과	0	×	×	0	원무관리 (사본발급)
행 정	심 사 과	0	×	×	0	보험청구관리
	전 산 팀	0	×	×	×	프로그램(서식) 관리
Q I 실		0	×	×	×	QI활동, 감염관리,보건관리
<u>o</u>	무기록사	0	×	×	0	의무기록관리 (사본발급)



[별첨 2] 의료정보/의무기록 출력 신청서

# 의료정보/의무기록 출력 신청서

결	신청자	부서장	신청자 소속 :		의무	담당	행정 부원장	병원장
재			성명: ( 신 청 일 자 :	서명)	기 록 팀			
		등록번호						
		환 자 명						
0	료정보	서 식 명						
		진료일자						
		진료과/ 주치의						
신	!청사유							
신	청내용							

\* 결재 후 의무기록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.



[별첨 3] 사생활보호 요청서

# 사생활보호요청서

이름				월일				
구분	□ 외래	□입원	(	)호				
사생활보호 요청 내용								
진료정보		외 일체 병	발급금지					
진료비정보	□ 진료비	금액						
[ 전묘미정보	□ 진료비	내역						
	□ 나이							
	미기타							
기타								
	<u> </u>	생활 보호	호 변경 :	요청				
 해지	<u>사</u>	생활 보호	호 변경 :	요청				
1	<u></u>	생활 보호	호 변경 :	요청				
□ 해지 □ 기타	\ <u>\</u>	생활 보호	호 변경 :	요청				
1	<u></u>	생활 보호	호 변경 :	요청				
1	<u></u>	생활 보호	호 변경 :	요청				
	<u></u>	생활 보호	호 변경 :	요청				
_ 기타			호 변경 : 호 요청 :					
_ 기타  항시	٨ŀ							
_ 기타	٨ŀ							
_ 기타  항시	٨ŀ	생활 보호		기간	<u></u> -	<u> </u>		
□ 기타     	<b>사</b> 등 년	생활 보 <u>9</u>	호 요청 :	기간	년 :	월 일)		

윌스기념병원장 귀하



[별첨 4] 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서약서

# 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서약서

본인은 월스기념병원(이하"갑 병원")에서 근무(이하 "재직 중" 이라 함)뿐 아니라 퇴직, 계약만료(이하 "퇴직"이라 함) 이후에도 점육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- 1. 본인은 병원의 정보보호규정 및 지침 등 병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.
- 2. 본인이 재직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독자적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개발/고안한 정보자산,기타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,사용,처분등의 일체의 권리는 병원에 있음을 인정하며,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병원의 영업비밀, 고객의 신용 및 신상정보, 제8자 소유정보, 기타 이에 준하는 정보와 이를 생산, 보관, 유통, 폐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리적 매체 및 산출자료가 병원소유의 정보자산(이하"정보자산이라 함)임을 확인합니다.
- 8. 본인은 정보자산을 분실,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함은 물론, 지정된 업무에 사용할 목적을 제외하고는 병원의 사전 서면등의 없이 반출하거나, 제3자에게 누설, 공개, 변조, 복사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하겠습니다.
- 4. 본인은 병원에서 인가한 정보자산만을 취급하고, 허가하지 아니한 정보나 시설에는 절대 접근하지 아니하며, 불법 소프트웨어 또는 병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프로그램이나 정보저장처리 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,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위드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
- 5. 본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제공한 B-MAIL시스템 및 계정을 사용하여 전송할 것이며, 병원 망을 통하여 수발신되는 모든 메일은 병원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원의 영업비밀 보호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점검 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.
- 6. 본인은 퇴직 동시에 병원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납하고,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보유하지 않으며, 병원의 사건 서면등의 없이는 이를 유용, 공개 혹은 제3자에게 누설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- 7. 본인은 퇴직 후 8년간 병원의 업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병원, 또는 기타 제8자를 위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
- 8. 본인은 건강정보는 본원에서 정하는 의무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열람,복사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의무기록(또는 건자의무기록)에 저장된 정보를 무난으로 열람, 복사, 유출하지 않겠습니다.
- 9. 본인은 위 각 서약사항 위반으로 "갑" 과 "을" 병원 업무에 장애론 일으키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, 관계 법령에 따른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지고, "갑" 과 "을" 병원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, "갑" 과 "을" 병원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른 것을 서약합니다.

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서명날인 합니다.

년 월 일

소 속:

명: (서명)

윌스기념병원 귀하



[별첨 5]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서약서(실습생)

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서(실습생)

본인은 윌스기념병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고, 직무수행 과정을 통해 알게 된 환자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진료 및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하며, 실습 중 또는 실습 후에도 불법공개나 부주의한 사용 노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법적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병원내의 모든 의료정보 및 의료자원은 병원 당국이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만 접근 및 사용하며, 허락 받은 사용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- 2. 병원내의 모든 의료정보 및 의료자원은 업무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.
- 3. 병원내의 모든 의료정보 및 의료자원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.
- 4. 교육 시 사용한 건강정보(등록번호,이름,주민등록번호,주소,전화번호,진단명)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 및 수기 의무기록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한다.
- 5. 인가 받은 사용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며, 제3자에게 노출되어 발생한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.
- 6. 허가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불법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져야 한다.

### 개인건강정보 보호 관련 법률

### 1. 의료법 제19조(비밀누설 금지) :

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·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.

#### 2. 의료법 제21조의 1항(기록 열람 등) :

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3. 의료법 제23조의 3항(전자의무기록) :

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·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4. 의료법 제87조의 1항(벌칙) :

제23조 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 5. 형법 제317조 1항(업무상 비밀누설의 금지) :

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약제사, 약종상, 조산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공증인,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.

본인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학 교 명	학	과	
학 번	주민등록	록번호	

작성	일자	:	20	년	월	잍
실습	부서	:				
성	명	:				(서명)



[별첨 6]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서약서(용역)

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서(용역)

본인은 _	년	월		일부로	윌스기념병원에서	용역과	관련한	업무를
수행 함에	있어 다음	사항을 준수할	것을 입	엄숙히	서약합니다.			

- 1. 나는 윌스기념병원 관련 용역업체에 근무하면서 소관업무가 병원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2.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병원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.
- 3. 나는 업무상 취득한 병원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, 귀 병원에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### 개인건강정보 보호 관련 법률

### 법률 제18조 2항(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):

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,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

본인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작성역	일자	:	20	년	월	잍
업 처	명	:				
소속-	부서	:				
성	명	:				(서명)